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도 등을 신설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삭제한 「보안업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원법 상 신원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승하선 변경 공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수첩 발급시 신원조사 제외(현행 제35조 삭제)

「보안업무규정」 개정이후 경찰청 협의결과 선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신원조사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원수첩 발급 시 신원조사 관련 절차를 명시한 내용을 삭제함

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의5 신설)

법 제55조의4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 절차로 임금체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반영함

다.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 승선자격(안 제42조의2)

법 제64조 신설을 통해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자격요건을 갖추 의무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승선자격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

라. 하선 변경공인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승·하선 공인업무 처리에 있어 사실관계 변경, 혹은 오기 등으로 인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나 승선변경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하선공인 변경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편의 개선 및 일선 집행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하선변경공인을 명확하게 반영함

마.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 명확화(안 제52조)

현행 시행규칙상 선내에 비치해야하는 의약품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선박소유자, 선박 내 의료관리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바.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 건의 반영(별표2, 별표4, 별지 제16호 서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20.1.1 발효)에 따라 선상 훈련 중 선박 손상제어훈련의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개정(‘18.7.1 발효)에 따라 여객선 교육시 군중관리 교육을 반영하며, 선원수첩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계약갱신의 공인”을 “계약갱신 혹은 오기(誤記) 등의 사유로 승선·하선 공인의 변경”으로,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승·하선변경공인신청서”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5 및 제39조의6을 각각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5(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

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5 앞에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을 삭제한다.

제39조의6 앞에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을 삽입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당직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제3조”를 각각 “선원법 제64조 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비치·보관”을 “보관”으로,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를 “법령에 따르고, 법 제82조 제5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2 여객선 교육란 중 여객선 기초교육의 교육내용란의 “여객선 안전훈련”을 “여객선 안전훈련, 군중관리”로 한다.

별표 4 해난사고 대응훈련란 중 선체손상 대처훈련의 주기란의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의 내지 2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한민국 / REPUBLIC OF KOREA	
	수첩번호 /Seafarer's Book Number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명(한글) Surname /Given name	
주민등록번호 /Citizen Reg. No	
성별 /Sex	발급일 /Date of Issue
발급관청 /Authority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u>계약갱신의 공인을</u>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u>승선변경공인신청서</u> 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 ----- ----- ----- ----- ----- -- <u>계약갱신 혹은 오기(誤記) 등의 사유로 승선·하선 공인의 변경</u> ----- <u>승·하선변경공인신청서</u> ----- ----- -----.
제35조(신원조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은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발급과 관련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에 관한 서식을 신원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5(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39조의5 · 제39조의6 (생략)

<신설>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
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제39조의6 · 제39조의7 (현행 제39
조의5 및 제39조의6과 같음)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선원당직 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제3조에 따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당직 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선원법 제64조 제6항-----

-----.

② ----- 선원법 제64조 제6항-----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관 -----
----- 법령에 따르고,
법 제82조 제5항에 따른 의약품

<u>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u> ③ (생 략)	<u>등의 비치 기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

